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세칙

(제정) 2005-11-17 세칙 제160호
(개정) 2014-02-21 지침 제348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19-07-31 규정 제524호
(개정) 2020-07-15 규정 제551호
(개정) 2020-12-22 규정 제561호
(개정) 2021-11-08 규정 제583호
(개정) 2022-01-04 규정 제58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 전임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2020. 7. 15.>

제2조(신규임용방법)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공개채용 지원자가 없는 분야
2. 공개채용 2회이상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분야
3.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신규임용시기) ① 공개채용에 의한 신규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채용에 의한 신규임용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조(채용분야 및 규모결정) ① 교원 신규채용 분야 및 규모는 교학처에서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4.25.>

② 교학처에서는 총장, 해당학과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정교원수, 전임교원 대비 학생비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제 2 장 공개채용 절차

제5조(채용공고) 전임교원 신규채용을 위해서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 채용예정분야·채용예정인원·지원자격·제출서류·접수방법·심사기준·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20.12.22>

제6조(지원서류의 접수) 지원 서류는 채용 공고문에 게시된 방법에 의하여 접수한다.

제7조(심사단계)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을 위한 심사전형은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교육능력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별표 1호서식)한다. <개정2014.2.21>

② 서류, 기초, 전공심사에는 각 심사전형별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사결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14.2.21>

③ “삭제” <개정 2014.2.21>

④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심사전형별 위원회는 신규채용계획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구성 운

영한다. <신설 2014.2.21>

⑤ 공정관리위원회는 채용계획에 의하여 채용예정학과 소속 전임교원을 제외한 내부 평교수중 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신설 2014.2.21>

⑥ 채용예정분야가 학과가 아닌 경우 이 세칙의 “채용예정학과” 또는 “채용예정분야가 속한 학과”는 “채용예정부서”로 본다. <신설 2020. 7. 15.>

⑦ 공정관리위원회는 심사전형별 공정성 심사결과(별표 2호서식)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4.2.21.> <개정 2020. 7. 15.>

제8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에는 지원자의 지원자격, 제출서류, 특정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구성비 등을 심사(별표 3, 3-1호서식)한다. <개정 2014.2.21>

②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에 준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신규 채용된 대학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 연구할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로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1.04>

③ 서류심사 위원회는 내부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며,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심사 평가에 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6.4.25.>

④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로 인정된 지원자에 한하여 기초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9조(기초심사) ① 기초심사는 지원자의 전공 일치여부, 학력 교육경력 및 산업체 경력 등 정량적 평가항목을 심사(별표 4, 4-1호서식)한다. <개정 2014.2.21., 2019. 7. 29.>

② 기초심사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하되 교외 심사위원을 3분이 1이상으로 하며,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채용예정 분야가 속한 학과의 전임교원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평가에 관여하지 않는다.<개정 2019. 7. 29.>

③ 교내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분야가 속한 학과의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교외 심사위원은 타 대학에서 관련전공 교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단, 2회이상 추천받았음에도 추천된 타 대학 전공교수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채용 예정분야가 속한 학과에 여성교수가 있을 경우에는 교내 기초심사위원 1명 이상을 여성교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21>

④ 심사는 평가표에 의하여 각 대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각 대상자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3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각 대상자의 득점으로 한다.

⑤ 기초심사의 전공일치 여부에서 심사위원반수 이상이 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전공 불일치로 판정하고, 전공 불일치 판정을 받은 자는 전공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7.29.>

제10조(전공심사) ① 전공심사는 지원자의 연구논문과 관련 연구실적 등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등의 평가항목을 심사(별표 5, 5-1호서식)한다. <개정 2014.2.21>

② 전공심사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하되 교외 심사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채용 예정분야가 속한 학과의 전임교원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 평가에 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6.4.25.>

③ 교내 심사위원은 채용 예정분야가 속한 학과의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해당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교외 심사위원은 타 대학에서 관련전공 교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단, 2회이상 추천받았음에도 추천된 타 대학 전공교수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채용 예정분야가 속한 학과에 여성교수가 있을 경우에는 교내 전공 심사위원 1명 이상을 여성교수로 추천하고, 기초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전공의 내부교수가 부족할 경우는 중복될 수 있다. <개정 2014.2.21>

④ 심사는 평가표에 의하여 각 대상자에 대해 연구실적의 양과 질을 각각 평가하고,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각 대상자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3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각 대상자의 득점으로 한다. <개정 2014.2.21>

⑤ 교학처장은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교육능력 심사대상자를 선정(별표 6호서식)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개정 2016.4.25.>

⑥ 교육능력 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범위내에서 선정하며, 다만,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교육능력 심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신설 2014.2.21>

1.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대상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는 3인 <신설 2014.2.21>

2.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대상자 수가 11인 이상인 경우는 4인 <신설 2014.2.21>

제11조(교육능력심사) ① 교육능력 심사에서는 공개강의를 통하여 대상자의 교육 및 강의능력을 심사(별표 7, 7-1호서식)한다. 단, 해당학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실무능력 평가를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② 공개강의 내용은 채용 예정분야와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자가 정한다.

③ 교육능력 심사를 위하여 채용예정 분야별로 교육능력 심사위원회를 두며, 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교육능력 심사위원회는 총장과 채용예정 분야가 속한 학과의 전체 전임교원 및 총장이 위촉하는 내부 교수를 포함하여 총6인으로 구성한다.

⑤ 각 심사위원은 평가표에 의하여 각 대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각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각 대상자의 득점으로 한다.

제12조(특별심사 및 재심사 등) ①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교육능력심사, 면접심사 결과 공정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의 주관하에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개정 2016.4.25.>

② “삭제” <개정 2014.2.21>

제13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에서는 면접심사 대상자에 대한 인성·가치관·대학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심사(별표 8, 8-1호서식)하며,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면접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2.21>

② 면접심사 위원회는 총장, 교학처장, 기획홍보처장, 산학협력단장, 해당학과장, 그 외 총장이 요구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6.4.25., 2019.7.29.>

③ 면접심사 위원회는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각 대상자의 득점으로 한다.

제14조(심사결과의 처리) 교원 인사위원회는 각 전형별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별표 9호서식)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2.21>

제15조(심사결과의 공개) ① 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제6항에 준하여 공개 채용에 지원한 자가 공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경우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20.12.22.>

② 심사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다른 지원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주민등록 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특별채용 절차

제16조(특별전형절차) ①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분야가 해당되는 학과의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이 세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전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제7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이 지침 제8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2005.11.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21.)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31.)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1호, 2020. 7.1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1호, 2020. 12.22.)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3호, 2021. 11.08.)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8호, 2022. 01. 04.)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형별 심사내용 및 배점

전형구분	배점	주요 심사내용
서류심사	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원자의 자격 ○ 모집단위별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구성비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 채용 공고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확인
기초심사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예정분야와 지원자 전공일치 여부 ○ 학위소지 여부 및 학부성적 평가 ○ 교육 및 연구경력 ○ 산업체 근무경력
전공심사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의 양적 평가 ○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의 질적 평가 ○ 최종학위논문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 연구실적 특기사항
교육능력심사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지식정도, 표현방법, 논리성 등 강의능력평가 ○ 표현의 논리성, 질의답변능력 등 의사발표능력평가 ■ 학과요구시, 실무능력평가 추가 및 대체가능
면접심사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성, 창의성 ○ 학생지도능력, 협력능력

※ 평점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교육 및 연구경력 세부 기준

교육경력	※ 교육 및 연구경력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경	력	내	용	인정률 (%)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100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학력 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전문대학 이상 대학에서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및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 5시간 이하 30%, 초과 시 시간당 10% 가산, 최대 70%				30~70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0
	중고등학교 교원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60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60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50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50
	대학의 장의 발령에 의하여 교육조교로 근무한 경력				50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50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60	

	경 력 내 용			인정률 (%)
	연구경력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단, 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학기간	
다음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100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 포함)를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10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대학의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연구조교로 근무한 경력			50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60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50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50	
대학의 장의 발령에 의하여 교육조교로 근무한 경력			50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민간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변호사 개업기간			100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70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0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9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90	

공정성 심사결과표(종합)

소관위원회 : 공정관리위원회

심사단계 (√)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채용전공분야	지원자수

<심사결과>

재심의 여부		
--------	--	--

심 사 일 : 년 월 일

공정관리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공정성 심사결과

소관위원회	: 공정관리위원회
-------	-----------

심사단계 (√)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채용전공분야	지원자수

<심사결과>

재심의 여부 (위원의견)	

심사일 : 년 월 일

공정관리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류심사 평가표

소관위원회 : 서류심사위원회

채용전공분야		응시번호		성명	
--------	--	------	--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내용	평가결과(적/부)
교육 및 연구경력	연구 2년 이상, 교육 2년 이상 (교육 및 연구경력은 서로 대치가능)	연구경력: 년 월 교육경력: 년 월	
병역	병역을 마친자 또는 면제자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전역여부 : 일시:	
학위	채용공고에 명시된 최종학위	대학명: 학위명: 취득일시:	
연구실적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200% 이상	연구실적물: %	
채용된 학과교수의 학사학위 구성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 자가 모집단위별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음	지원자: 대학교 과	
		<학과교수> 대학교 과 대학교 과 대학교 과	
채용공고 자격기준 충족여부	해당 채용공고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판단	충족(), 미충족() 미충족 사유 :	
심사부적합사유			

심사일 : 년 월 일

서류심사 위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직급	성명	(서명/인)

서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초심사 평가표

소관위원회 : 기초심사위원회

채용전공분야		응시번호		성명	
--------	--	------	--	----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학 력	학위 구분 (5점)	【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박사학위</td> <td>5점</td> <td>석사학위</td> <td>3점</td> <td></td> <td></td> </tr> </table>				박사학위	5점	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	석사학위	3점																																					
	전공일치 여부 (10점)	【배점】 산출식: 학사 + 석사 + 박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전공일치도</td> <td>일치</td> <td>유사</td> <td>불일치</td> <td></td> <td></td> </tr> <tr> <td>학사</td> <td>2점</td> <td>1점</td> <td>0점</td> <td></td> <td></td> </tr> <tr> <td>석사</td> <td>3점</td> <td>2점</td> <td>0점</td> <td></td> <td></td> </tr> <tr> <td>박사</td> <td>5점</td> <td>3점</td> <td>0점</td> <td></td> <td></td> </tr> </table> <p>※ 전공일치 여부 점수가 7점 미만일 경우, 전공불일치로 판정 (단, 예체능계열의 석사학위 소지자의 점수가 3점 이하일 경우 전공불일치로 판정함)</p>				전공일치도	일치	유사	불일치			학사	2점	1점	0점			석사	3점	2점	0점			박사	5점	3점	0점			적합	부적합										
전공일치도	일치	유사	불일치																																						
학사	2점	1점	0점																																						
석사	3점	2점	0점																																						
박사	5점	3점	0점																																						
대학성적 (5점)	【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A학점 이상</td> <td>5점</td> <td>C학점 이상</td> <td>3점</td> <td></td> <td></td> </tr> <tr> <td>B학점 이상</td> <td>4점</td> <td>C학점 미만</td> <td>0점</td> <td></td> <td></td> </tr> </table>				A학점 이상	5점	C학점 이상	3점			B학점 이상	4점	C학점 미만	0점																											
A학점 이상	5점	C학점 이상	3점																																						
B학점 이상	4점	C학점 미만	0점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20점)	【배점】 산출식: ∑(기간×경력별 가중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7년 이상</td> <td>20점</td> <td>6년 미만~4년 이상</td> <td>10점</td> <td></td> <td></td> </tr> <tr> <td>7년 미만~6년 이상</td> <td>15점</td> <td>4년 미만</td> <td>0점</td> <td></td> <td></td> </tr> </table> 【경력별 가중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학위과정</td> <td>1.0</td> </tr> <tr> <td>조교수(전임, 초빙, 산학협력중점) 이상</td> <td>1.0</td> </tr> <tr> <td>겸임, 강사, 조교</td> <td>0.5</td> </tr> <tr> <td>중등교사</td> <td>0.3</td> </tr> </table> <p>※ 강사는 학기당 6시간 이상 / 학위과정은 석사 2년, 박사 2~3년 인정</p>				7년 이상	20점	6년 미만~4년 이상	10점			7년 미만~6년 이상	15점	4년 미만	0점			학위과정	1.0	조교수(전임, 초빙, 산학협력중점) 이상	1.0	겸임, 강사, 조교	0.5	중등교사	0.3																
7년 이상	20점	6년 미만~4년 이상	10점																																						
7년 미만~6년 이상	15점	4년 미만	0점																																						
학위과정	1.0																																								
조교수(전임, 초빙, 산학협력중점) 이상	1.0																																								
겸임, 강사, 조교	0.5																																								
중등교사	0.3																																								
산업체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20점)	【배점】 산출식: ∑(기간×직종별 가중치×전공일치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5년 이상</td> <td>20점</td> <td>3년 미만~2년 이상</td> <td>17점</td> <td></td> <td></td> </tr> <tr> <td>5년 미만~4년 이상</td> <td>19점</td> <td>2년 미만~1년 이상</td> <td>16점</td> <td></td> <td></td> </tr> <tr> <td>4년 미만~3년 이상</td> <td>18점</td> <td>1년 미만</td> <td>0점</td> <td></td> <td></td> </tr> </table> 【직종별 가중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대기업, 공공기관</td> <td>1.0</td> <td colspan="2">【전공일치도】</td> </tr> <tr> <td>중소(중견)기업</td> <td>0.7</td> <td>일치</td> <td>1.0</td> </tr> <tr> <td>소기업</td> <td>0.5</td> <td>유사</td> <td>0.5</td> </tr> <tr> <td></td> <td></td> <td>불일치</td> <td>0.0</td> </tr> </table> <p>※ 4대보험 납부 또는 납세증명(전공일치도 1.0인 기업만이 있는 경력만 인정)</p>				5년 이상	20점	3년 미만~2년 이상	17점			5년 미만~4년 이상	19점	2년 미만~1년 이상	16점			4년 미만~3년 이상	18점	1년 미만	0점			대기업, 공공기관	1.0	【전공일치도】		중소(중견)기업	0.7	일치	1.0	소기업	0.5	유사	0.5			불일치	0.0		
5년 이상	20점	3년 미만~2년 이상	17점																																						
5년 미만~4년 이상	19점	2년 미만~1년 이상	16점																																						
4년 미만~3년 이상	18점	1년 미만	0점																																						
대기업, 공공기관	1.0	【전공일치도】																																							
중소(중견)기업	0.7	일치	1.0																																						
소기업	0.5	유사	0.5																																						
		불일치	0.0																																						
만점 : 60점		합 계																																							

※ 경력 산정식의 기간은 (근무월수÷12)로 산정한다.

전공부적합 사유	
----------	--

심사일 : 년 월 일

기초심사 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인)

기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전공심사(연구실적 양/질) 평가결과(종합)

소관위원회 : 전공심사위원회

채용전공분야

응시 번호	성 명	평가점수	심사위원별 전공심사 평가점수						평가결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최고	최저	합계	평균 점수	득점
		(양)평가											
		(질)평가											
		일치도											
		특기사항											
		(양)평가											
		(질)평가											
		일치도											
		특기사항											
		(양)평가											
		(질)평가											
		일치도											
		특기사항											
		(양)평가											
		(질)평가											
		일치도											
		특기사항											

심 사 일 : 년 월 일

전공심사 위원장 직위 교학처장 성명 (서명/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전공심사(연구실적 양/질) 평가표

소관위원회 : 전공심사위원회

채용전공분야		응시번호		성명	
--------	--	------	--	----	--

순번	논문 제목	심사청		(양) 평가				(질) 평가				비고
				전공 일치도 (A)	학술 지수준 (B)	인정 비율 (C)	계 (A×B ×C)	전공 일치도 (A)	학술 지수준 (B)	인정 비율 (C)	계 (A×B ×C) × $\frac{25}{2}$	
		양 (√)	질 (√)									
1												
2												
3												
4												
5												
6												
7												
계							%					점

연구실적 평가 결과				
(양)평가 (25점)	(질)평가 (25점)	일치도 (8점)	특기사항 (2점)	(총점) 합계
% 점	점	점	점	점

심사일 : 년 월 일

전공심사 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인)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전공심사(연구실적의 양,질) 평가기준

전공심사 (구분)	내 용	비고																
연구 실적의 양 (25점)	<p>【산출식: $\Sigma(A \times B \times C)$】 <연구실적 배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연구실적</th> <th style="width: 10%;">배 점</th> <th style="width: 30%;">연구실적</th> <th style="width: 10%;">배 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70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5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 이상 ~ 50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6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0% 이상 ~ 70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2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 이상 ~ 40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3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 이상 ~ 60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9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 이상 ~ 30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으로 게재 예정 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음 ■ 전공일치도(A)는 일치 1.0, 상당일치 0.7, 부분일치 0.4, 불일치 0 ■ 학술지 수준에 따른 적용기준(B)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0, SCI급 학술지 2.0 ■ 인정비율(C)은 단독 100%,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이상 공동 30%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70% 인정 ■ 석·박사 학위논문,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불인정 ■ 해당 연구실적을 불인정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사유를 명기 	연구실적	배 점	연구실적	배 점	700% 이상	25점	400% 이상 ~ 500% 미만	16점	600% 이상 ~ 700% 미만	22점	300% 이상 ~ 400% 미만	13점	500% 이상 ~ 600% 미만	19점	200% 이상 ~ 300% 미만	10점	
연구실적	배 점	연구실적	배 점															
700% 이상	25점	400% 이상 ~ 500% 미만	16점															
600% 이상 ~ 700% 미만	22점	300% 이상 ~ 400% 미만	13점															
500% 이상 ~ 600% 미만	19점	200% 이상 ~ 300% 미만	10점															
연구 실적의 질 (25점)	<p>【산출식: $\Sigma \frac{25(A \times B \times C)}{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중 지원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한 200% 실적물을 심사함 ■ 연구실적물 순위는 전공일치, 학술지수준, 인정비율 순으로 함 ■ 전공일치도(A)는 일치 1.0, 상당일치 0.7, 부분일치 0.4, 불일치 0 ■ 학술지 수준(B)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0.7, SCI급 학술지 1.0 ■ 인정비율(C)은 단독 100%,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이상 공동 30% 적용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70% 인정 																	
일치도 (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위논문과 채용분야 일치도 - 일치 8점, 부분일치 5점, 불일치 0점 																	
특기사항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분야 기술사 및 채용공고에 명시된 우대자격 소지자 																	

교육능력심사 평가결과(종합)

소관위원회 : 교육능력심사위원회

채용전공분야

위원별 교육능력 심사 평가점수 현황						비 고
평가위원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구 분	성 명	()	()	()	()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구 분	교육능력 심사 대상자(개인별) 평가점수				비 고
	응시번호				
	성 명				
평균점수					
점수합계					
(최고점)					
(최저점)					

심 사 일 : 년 월 일

교육능력심사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장	직위 총 장	성명	(서명/인)

교육능력심사 평가표

소관위원회 : 교육능력심사위원회

채용전공분야	응시번호	성명
--------	------	----

공개강의 주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점수
		정 도					
전공강의능력 (20점)	전공지식정도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점
	교수법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점
의사발표능력 (20점)	표현의 논리성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점
	질의답변능력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점
계 (40점 만점)							점

심사일 : 년 월 일

교육능력심사 위원(장) 직위/급 성명 (서명/인)

면접심사 평가결과(종합)

소관위원회 : 면접심사위원회

채용전공분야

위원별 면접심사 평가점수 현황						비 고
평 가 위 원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구 분	성 명	()	()	()	()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구 분	면접심사 대상자(개인별) 평가점수					비 고
	응시번호					
	성 명					
평균점수						
점수합계						
(최고점)						
(최저점)						

심 사 일 : 년 월 일

면접심사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 학 과 장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 산학협력단장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 기획홍보처장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 교학처장	성명	(서명/인)
위원장	직위 총 장	성명	(서명/인)

최종합격자 선정조서

소관위원회 : 교원인사위원회

채용전공분야

응시번호	성명	출신대학	단계별 심사(평가)결과						종합점수	최종합격 (합격/불합격)
			서류 심사 (적/부)	기초심사		전공심사	교육능력 심사	면접심사		
				전공일치 (적/부)	60점	60점	40점	40점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세칙 제14조(심사결과의 처리)에 근거하여 상기와 같이 각 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